

# 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를 법원행정처에 알리는 절차,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표시하고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규율함

## 2. 주요내용

-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,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함(안 제2조제3항 신설)
-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지체 없이 그 확정 사실을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알려야 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
-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함(안 제4조제3항)
-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

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함(안 제5조제1항 신설)

-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

### **3. 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 일부개정**

**예규안**

붙임과 같음

### **4. 신·구조문대비표**

붙임과 같음

## 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 일부개정예규안

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2016-1)”를 “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(재일2016-1)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예규는”을 “이 예규는”으로, “송부 및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”을 “송부,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재판서 정보 송부”를 “재판서 정보 송부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대법원 이외의 법원이”를 “대법원 외의 법원이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대법원 이외의 법원이”를 “대법원 외의 법원이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,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법

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 제1항에 의하여” 를 “제2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관리 등” 을 “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사법지원실에는” 을 “사법지원실은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제3항(중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.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. 1. 3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) 이 예규는 제1조에 따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</p>	<p>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(재일 2016-1)</p>
<p>제1조 (목적)</p> <p><u>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보 송부 및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 (목적)</p> <p><u>이 예규는 -----</u> ----- ----- <u>송부,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 (재판서 정보 송부)</p> <p>① <u>대법원 이외의 법원이,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</u></p>	<p>제2조 (재판서 정보 송부 등)</p> <p>① <u>대법원 외의 법원이,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대법원 외의 법원이 -----</u> ----- -----</p>

<p>알려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-----.</p> <p>③ <u>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,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.</u></p>
<p>제3조 (담당부서의 지정 등)</p> <p>① <u>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 받은 재판서 정보의 관리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.</u>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는 하급심 명령·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·관리한다.</u></p>	<p>제3조 (담당부서의 지정 등)</p> <p>① <u>제2조제1항에 따라 -----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-----.</u></p> <p>② ----- <u>사법지원실은 -----.</u></p>
<p>제4조 (정보제공 등)</p> <p>① <u>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이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보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(정보화심의관)에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 (정보제공 등)</p> <p>① <u>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보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보를 송부하여야</u>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으면, 해당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이 있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(코트넷)에 하급심의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.</p>	<p>한다.</p> <p>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 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.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대법원의 소관 행정청 등에 대</p>



	<p><u>한 통보)</u></p> <p>① <u>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·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·규칙에 관한 위헌·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·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.</u></p>
--	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45